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32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김기현 · 윤한홍 · 김태규
최수진 · 박충권 · 이소희
김대식 · 이달희 · 박수민
서범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관할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부적정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1월 무분별한 성·복토 등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개량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내와리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불법 성·복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최종 사용처인 농지에 대한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불법

성·복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폐기물이 재활용 물질·제품의 형태로 공급·사용되는 과정과 실제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성토·복토 재활용의 완료 보고) ①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 중 폐기물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시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2항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토·복토 재활용의 완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8조의2(성토·복토 재활용의 완료 보고) ①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 중 폐기물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시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4. (생략) <u><신설></u>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9의4. (현행과 같음) 9의5.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 12의4. (생략) ③·④ (생략)	10. ~ 12의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